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0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고동진 · 주호영 · 박정훈
조지연 · 송석준 · 박덕흠
서범수 · 성일종 · 나경원
김대식 · 안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및 활용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중 취업활동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영주자격 취득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법률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하 “국가전략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체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략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전략산업기술”이라 한다)과 관련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관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대학·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다. 국가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전략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중대한 기여 또는 기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의3제3항 중 “사람 등”을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에서 3년(전략산업기술 연구·개발에의 현저한 기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에 종사할 것
2. 제1호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대하여서는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에의 지속적인 종사를 전제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직종제한·고용형태 등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5(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동반가족에 대한 특례) ① 제8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

구·개발에의 지속적인 종사를 전제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직종제한·고용형태 등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배우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8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미성년의 자녀의 양육 및 가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부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보조인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에의 지속적인 종사를 전제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직종제한·고용형태 등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6(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체)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18호다목, 제10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제10조의4,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에 따른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관련 특례의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증을 발급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7.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u>“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u></p> <p>가. <u>「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하 “국가전략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체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략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전략산업기술”이라 한다)과 관련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p> <p>나. <u>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u></p>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생략)

<신 설>

등-----

1. 대한민국에서 3년(전략산업 기술 연구·개발에의 현저한 기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에 종사할 것
2. 제1호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국가전략산업 외국인 재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대하여서는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신 설>

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에
의 지속적인 종사를 전제로 사
증 발급의 기준·절차, 체류자
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직종제
한·고용형태 등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5(국가전략산업 외국인
재의 동반가족에 대한 특례)
① 제8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
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
구·개발에의 지속적인 종사를
전제로 사증 발급의 기준·절
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직종제한·고용형태 등 취
업활동과 관련한 사항(국가전
략산업 외국인재의 배우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8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미성년의 자녀의 양육 및 가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부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보조인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에의 계속적인 종사를 전제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직종제한·고용형태 등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6(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체)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18호다목, 제10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제10조의4,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에 따른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관련 특례의 운영과 관련

<신 설>

한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
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